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 조사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19)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6. 18.
3.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Ⅲ. 검토의견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 대상의 확대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u>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18조의2(국가기관 등의 채용 및 평가)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u>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과 제18조(특별임용),¹⁾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3호²⁾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3호³⁾에 따라 북한

1)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탈주민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개선발 또는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추천채용 등을 통해 행정보조인력으로 선발되고 있음.⁴⁾⁵⁾

□ 정부내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말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 내 북한이탈주민이 공무원 또는 행정보조인력으로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총 211명으로, 전체 34,314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의 0.61%에 해당함. 전체 북한이탈주민수 대비 정부내 고용인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4) 인사혁신처,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022, 73면 참조.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조사하여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이라는 범주로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장려하고 있음.

5) 공공기관 채용 관련 자료는 통일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정부내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구분		'19	'20	'21	'22	'23	'24
중앙부처	합계	74	76	82	87	86	100
	공무원	35	38	37	37	38	37
	행정보조인력	39	38	45	50	48	63
지자체	합계	113	111	109	115	108	111
	공무원	87	81	79	81	75	82
	행정보조인력	26	30	30	34	33	29

□ 개정안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의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로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동법 제2조⁶⁾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각 호에 열거된 행정기관에 한정됨에 비하여, “국가”는 현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그 외에 헌법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등도 포함하는 행정의 주체를 의미하는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 대상의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의견임.

□ 한편,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고,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소속지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채용현 황 조사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
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생략) <u><신설></u>	제18조의2(국가기관 등의 채용 및 평가)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

② · ③ (생략)	<u>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u>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⁸⁾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8)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자립지원 이외에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 등은 없는 실정임.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화적 배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⁹⁾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국민 전체의 인식전환 없이는 실질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제고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 없이 업무 등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9)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5.7.14. 참조

판단됨.

- 다만,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6호) 제22조의4¹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음으로 개정안이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근거는 없으나 통일부가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21개 기관 200명, 2025년 23개 기관 17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으로, 정부내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
- 현재 다수의 국가기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인원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함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6호, 시행 2025.10.9.) 제22조의 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써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임.

□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교육과 관련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박충권의원안 (의안번호 8164)	송옥주의원안 (의안번호 8556)	송재봉의원안 (의안번호 10919)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u>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u>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주요내용) <u>북한이탈주민 고용</u>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고용 노력대상을 확대 하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 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문 의 처
02)6788-5267